제330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6. 3. 7~ 3. 16)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330회 임시회

(2016. 3. 7 ~ 3. 16)

목 차

제330회 임시회

Ⅰ.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2. 회기 및 운영 ·····
3. 의 사 일 정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2. 처 리 현 황 ·····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2. 처 리 현 황 ·····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4. 주요 처리사례 ·····

Ⅳ.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2. 201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Ⅰ.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6. 2. 26(금)

○ 집회 일자 : 2016. 3. 7(화) 14:00

○ 집회 사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6. 3. 7. ~ 3. 16(10일간, 2016년 : 28일, 총누계 307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4 (연누계 : 10　총 누계 54)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30회 임시회	8	1	2	1	-	1	3	-
2016 년도	36	4	10	5	6	6	5	-
총 누 계	537	38	115	73	84	96	105	26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16. 3. 7(월) 14: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 1. 제33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6. 3. 8(화) 10:00	**《 제2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문일답 : 장명식 의원 - 일괄질문·일괄답변 : 김종철 의원, 강영수 의원, 이학수 의원	
2016. 3. 9(수) 10:00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괄질문·일괄답변 : 최영일 의원, 최인정 의원, 정진세 의원 2. 본회의 휴회의 건	
2016. 3.16(수) 14:00	○ 5분 자유발언 - 박재만 의원, 김현철 의원, 장학수 의원, 최영일 의원 1.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13.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14.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16.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연안초등학교) 26.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화정중학교) 27.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 영 위 원 회	3. 7(월) 10:30	1	○ 운영위원회 간담회 ○ 일반의안 심사의 건 -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의회 교섭 단체 등록 등에 관한 내규 일부 개정 내규안 심사의 건	
행정자치 위 원 회	3. 10(목) 14:00	1	○ 의안심사 -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15(화) 10:00	2	○ 현장 의정활동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 소방공무원 근무형태 개선 간담회 ○ 한국 스카우트 전북연맹 방문	
환경복지 위 원 회	3.11(금) 10:00	1	○ 현장 의정활동 - 여성긴급전화 1366(긴급피난처) 전북센터 방문 -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방문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광역치매관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3. 10(목) 10:00	1	○ 의안심사 -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장 의정활동 -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교 육 위 원 회	3. 10(목) 10:00	1	○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3.11(금) 10:00	2	○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주·군산·익산·정읍 지원청 - 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 교육지원청 - 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교육지원청	
	3. 14(월) 10:00	3	○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 전북 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 교육문화회관 ○ 의안심사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30회 (2016. 3. 16기준)

구 분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28	21	4	17				6			1	
	누 계		673	407	173	226	8	5	1	134			76	28
의 회	소계	금회	12	9	4	5				2			1	
		누계	353	240	151	89		5	1	5			76	
	의원	금회	12	9	4	5				2			1	
		누계	320	240	151	89		4		3			65	8
	위원회	금회												
		누계	33					1	1	2			11	18
도지사	금 회		14	12		12				2				
	누 계		232	124	20	99	5			96		11		1
교육감	금 회		2							2				
	누 계		88	43	2	38	3			33		11		1

2. 처리현황

○ 총 괄

제330회 (2016. 3. 16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28**	**28**	**25**	**3**					
		누계	673	654	547	92		11		4	19
조례안	소계	금회	**21**	**21**	**18**	**3**					
		누계	407	390	310	75		2		3	17
	의회	금회	**9**	**9**	**7**	**2**					
		누계	240	225	178	44				3	15
	도지사	금회	**12**	**12**	**11**	**1**					
		누계	124	123	95	27		1			1
	교육감	금회									
		누계	43	42	37	4		1			1
규 칙 안		금회									
		누계	5	5	5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6**	**6**	**6**						
		누계	134	134	119	5		7		1	2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22	22	9	11		2			
건의결의안		금회	**1**	**1**	**1**						
		누계	76	76	75	1					
기 타 의 안		금회									
		누계	28	28	28						

○ 위 원 회

구 분		회부									처리					미료	미심사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결		부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금회	25	21			4					25	22	3				
	누계	577	405	5		130		22	13	2	558	451	92	11	4	19	
운영위원회	금회	1	1								1	1					
	누계	30	24	4					2		30	28	1			1	
행정자치위원회	금회	11	10			1					11	10	1				
	누계	113	92			19			1	1	112	96	15	1		1	
환경복지위원회	금회	5	4			1					5	5					
	누계	88	76			10			2		84	67	14	1	2	4	
산업경제위원회	금회																
	누계	82	44			35			3		79	66	8	5		3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금회	5	5								5	4	1				
	누계	109	73			33			3		105	87	18			4	
교육위원회	금회	3	1			2					3	2	1				
	누계	131	96			33		1		1	124	104	16	2	2	7	
특별위원회	금회																
	누계	23						21	1	1	23	11	11	1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의									처리					미료	미상정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총 계	금회	3				2			1		3	3					
	누계	96	1			5			67	23	96	95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의									처리					미료	미상정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결 원안	가결 수정	부결	철회		
총 계	금회	28	21			6			1		28	25	3				
	누계	673	407	5	1	134		22	76	28	654	547	92	11	4	19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접수>

제330회 (2016. 3. 16기준)

구 분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동의	일반의안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673	407	173	226	8	5	1	134		22	76	28
의회	소 계	353	240	151	89		5	1	5			76	
	의 원	320	240	151	89		4		3			65	8
	위원회	33					1	1	2			11	18
전라북도지사		232	124	20	99	5			96		11		1
전라북도교육감		88	43	2	38	3			33		11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30회 (2016. 3. 16기준)

구 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계류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673	654	547	92		11		4	19
조례안	소 계	407	390	310	75		2		3	17
	의 회	240	225	178	44				3	15
	도 지 사	124	123	95	27		1			1
	교 육 감	43	42	37	4		1			1
규 칙 안		5	5	5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134	134	119	5		7		1	2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22	22	9	11		2			
건 의 결 의 안		76	76	75	1					
기 타 의 안		28	28	28						

의안번호	646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한옥형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시설물의 사용예약 시점 변경, 결제·징수방식을 추가하고자 함

❍ 기타 불합리한 규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정부 불합리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행위제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삭제된 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8조)

나. 시설물의 사용예약 시점 변경 및 결제방법 다양화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다. 한옥형 숙박시설 신설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함(별표)

의안번호	647

전라북도 도지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해 제공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신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 대상지역 지정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등 신설(안 제6조의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제공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신설(안 제6조의3)

다.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안 제10조)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방법 변경(안 제10조의2조)

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참석수당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18조)

의안번호	648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2016.01.22.)*에 따라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

*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인 관련 협회 참여 배제

□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2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개정)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나.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다.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안 제2조제2항)

라.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안 제3조제2항)

<수정안 신구대조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3. (생 략)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 ---------- ---------- --------

의안번호	649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범위 명확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및 감면기한의 특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의해 위임된 전라북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율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율을 축소함(안 제4조, 제6조, 제8조)

다. 국세와 형평성을 위해 감면기간 실질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단축함(안 제7조)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신설에 따른 도세 감면조례의 감면율 규정(안 제9조)

마.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4조)

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감면기한의 특례 등(안 제21조, 제22조, 제24조)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체계와 절차 등 정비

의안번호	650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2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한 사항 등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함

□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위임되어 조례에서 정한 조문

나.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위·수탁 처리 규정(안 제4조)

의안번호	651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증복하여 규정한 사항 등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세목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세목의 세율을 규정

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함(안 제7조)

라. 보통징수 등록면허세(면허)의 납기 : 매년1월16일부터 1월31일(안 제9조)

마.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할 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함(안 제21조)

의안번호	652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시군에서 도에 환원한 사무 및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를 정비

□ 주요내용

가. 도 수행 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안 제2조2항 별표2)

나.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삭제(안 제2조2항 별표2)

의안번호	653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회계 계정이 변경됨에 따라

-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동부권특별회계 세입 관련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7조제1항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의한 생활기반계정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의안번호	654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개념을 바로잡아 교육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확보하고

❍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을 연수원 업무에 포함하고 민간위탁 등 관련사항을 연수원 설립 취지에 맞게 반영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관련법에 맞게 조정(안 제1조, 제3조)

나. 교통문화연수원 업무내용 일부 조정 및 신설(안 제5조)

다. 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의 위탁내용 일부 조정(안 제7조)

라.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사항 일부 삭제(안 제8조)

의안번호	655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5.7.24)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개인정보이용 서식 보완(안 제9조 별지 제6호)

나.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명칭 변경(안 제23조 제1항)

의안번호	656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정지사유인 대원의 해임규정이 도 조례에서 상위법인 법률에 규정되어 법조문을 정비하고

❍ 「정부조직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변경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관련 조례 명칭 변경 (안 제1조)

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조문 변경(안 제8조1항1호)

의안번호	657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5.7.4.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해 그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나. 재단명칭 변경(안 제1조·제2조)

다. 재단목적 변경(안 제1조·제5조)

라. 재단에 두는 기구 및 사업 변경(안 제3조·제4조)

마. 잔여재산의 귀속 삭제(안 제11조)

의안번호	658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연안초등학교)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부지 내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학교신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 군산시 조촌동에 ‘가칭’ 연안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

(단위학급, 명, ㎡, 천원)

지역	학교명(‘가칭’)	학급수			학생수		설립예정지	개교예정일	소요예산액	설립방법
		일반	특수	병설	초	유				
군산	연안초	36	1	3	1,224	61	군산시 조촌동 2	2019.3.1	24,163,351	신설

의안번호	659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화정중학교)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주○○부대이전 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시설(학교신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 전주시 송천동에 ‘가칭’ 화정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

(단위 : 학급, 명, ㎡, 천원)

지역	학교명 (‘가칭’)	학급수			학생수	설립예정지	개교 예정일	소요 예산액	설립 방법
		일반	특수	합계					
전주	화정중	24	1	25	81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7-2	2019.3.1	19,417,115	신설

의안번호	660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인희 의원 외 19인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기존『문화재보호법』에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되어 시행(2016.3.28.)됨에 따라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3.28.)

□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2개 분야(예능, 기능)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7개 분야로 확대 제정 (안 제2조)

나.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및 전수교육

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조사

마. 도무형문화재의 진흥

의안번호	661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박재완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현행「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가 신설되어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경관법」 및 「전라북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도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비공개 원칙” 사항을 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조문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기사항 수정 등

□ 주요내용

가. 제3조(구성 및 기능) 제3항 “제5조제6항”은 인용되는 내용이 조례인지 법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 제5조제6항”으로 개정

나. 제5조(구성) 위원회에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도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제3항 제9호로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을 신설

다. 제5조(구성) 제1항 30“인”을 30”명“으로, 제3항 제4호 3”인“을 3”명“으로 제6호·제7호 ”인“을 ”명“으로 개정

라. 제12조(회의록) 제2항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개정

마. 제17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 “제39조의15제2항”을 법 개정 내용 반영하여 “제39조의17제2항“으로 개정

의안번호	662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 출 자	백경태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7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가. 출석일시 : 2016. 3. 8(화) 10:00(제2차 본회의)

2016. 3. 9(수) 10:00(제3차 본회의)

나. 출석 대상자 :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다. 출석요구이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의안번호	663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정호영·이현숙·송성환·강용구 최은희·국주영은 외 5인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전라북도민의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의안번호	664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호영·조병서·황현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4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 혁신지속학교를 포함하여, 혁신학교 정의를 재규정함(안 제2조)

❍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에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내용을 추가하여 혁신+학교 운영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 3년차 종합평가를, 자체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4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 운영) ① · ② (생 략) ③ 혁신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여 지원한다. ④ ~ ⑥ (생 략)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8조----------. ④ ~ ⑥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665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제 출 자	최훈열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 및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자나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정함(안 제5조)

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회의 및 의결·보고·간사·실비보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의안번호	666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용구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결산시기 조정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7월에서 5·6월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긴급현안질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안 제8조제1항제1호)

-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7월 둘째주 화요일에서 6월 둘째주 화요일로 변경

나. 타 상임위 소관 긴급현안질문시 해당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안 제45조제1항)

의안번호	667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진세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0 29
	의 결 일 자	2016. 3.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원장후보자의 자격을 의료원 현실에 맞도록 확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법령에 맞게 개정함(제명)

나. 임원을 원장, 이사, 감사로 하고, 이사의 수를 변경함(안 제5조)

다. 원장후보자 자격을 현실에 맞게 정함(안 제7조)

라. 의료원의 기구 및 정원, 규정 제·개정 등 도지사의 승인사항 삭제(안 제12조)

마.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의안번호	668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현숙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추가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또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을 법률에 맞게 개정함(제명)

나. 광역치매센터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의안번호	669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양성빈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상징물의 종류, 관리방법 등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물로 전라북도 이미지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징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통합브랜드, 문장·철인·휘장, 도기, 도화등 상징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3조)

다. 상징물을 제정 또는 변경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라.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문장·철인의 사용범위와 휘장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도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관련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아.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9조)

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의 통합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차. 상징물 사용관련하여 위반시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의안번호	670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 54백만원

-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1,014백만원 중 배분기준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된 54백만원 편성

의안번호	617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2.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2. 29
	의 결 일 자	2016. 3.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13.7월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치매센터를 지정· 위탁 운영 하여 오던중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설치)개정됨에 따라 각 시도가 주최가 되어 민간위탁 설치 운영 하도록 함

❍ 인구 고령화와 함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고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 치매전문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설 및 운영 개요

○ 시 설 명 ;「전북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 위 치 : 전주시 소재 (공공건물 또는 민간건물)

○ 시설 기준 : 사무실,회의실,교육・세미나실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6. 7.1.～2019. 6. 30(3년간)

○ 사 업 비 : 596백만원(국비70%,도비30%)

○ 인 력 : 9명(센터장1,사무국장1,팀원7)

의안번호	67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전라북도의회의장		제 출 일 자	20116. 3.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직 위	성 명	주 소	비 고
도 의 원 (3인)	박 재 완	완주군 봉동읍 추동안길	
	이 해 숙	전주시 완산구 배학3길	
	강 용 구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회 계 사 (1인)	박 진 섭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전직공무원 (6인)	모 삼 종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오 규 삼	전주시 완산구 양지2길	
	김 용 준	전주시 덕진구 신버들5길	
	김 재 구	전주시 완산구 견훤로	
	권 기 열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최 학 주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의안번호	673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양성빈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3.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3. 16	심 의 결 과	원안가가결
이 송 일 자	2016. 3. 17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11개 기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전 산업분야의 기반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세수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애향심고취를 통해 자발적 기부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고향기부를 법정화하여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고향기부”의 개념을 정리하여 법률을 보완하라.

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생략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라.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 야 별

(2016. 1. 1~ 2016. 3. 16)

구 분	계	행 정	교 육	사 회	보 건	환 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 타
금 회	8		1		4					1		2		
2016년 누 계	8		1		4					1		2		

○ 제출자별

구 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8	8	8				
2016년 누 계	8	8	8				

2. 처리현황

구 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8	7	4			3	1
2016년 누 계	8	7	4			3	1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2016. 3. 16

구 분	위 원 회 별	접 수	처 리 상 황				비 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까지	소 계	39	39	37		2	
	운 영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4	4	4			
	환경복지위원회	11	11	11			
	산업경제위원회	6	6	6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2	12	12			
	교 육 위 원 회	3	3	3			
	기 타	3	3	1		2	
금회	소 계	8	8	7	1		
	운 영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4	4	4			
	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3	3	3			
	교 육 위 원 회	1	1		1		
	기 타						
누계	소 계	47	47	44	1	2	
	운 영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4	4	4			
	환경복지위원회	15	15	15			
	산업경제위원회	6	6	6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5	15	15			
	교 육 위 원 회	4	4	4			
	기 타	3	3	1		2	

Ⅳ.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6. 1. 1 ~ 2016. 3. 16)

구분 / 기관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81	81	0	100	
	누 계	81	81	0	100	
도	금 회	72	72	0	100	
	누 계	72	72	0	100	
교육청	금 회	9	9	0	100	
	누 계	9	9	0	100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6. 1. 1 ~ 2016. 3. 16)

구분 / 기관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 지	산 업 경 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81		18	9	7	19	28	
	누 계	81		18	9	7	19	28	
도	금 회	72		18	8	7	19	20	
	누 계	72		18	8	7	19	20	
교육청	금 회	9			1			8	
	누 계	9			1			8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6. 3. 16)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311	1,311		
전라북도	970	970		
교 육 청	341	341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6. 3. 16)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건 설	교 육	특 별
합 계	1,311		324	151	132	229	401	12
전라북도	970		308	146	127	226	160	3
교 육 청	341		30	11	11	18	265	6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6. 3. 16)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건 설	교 육	특 별
합 계	4,561		1,472	446	548	698	1,258	139
전라북도	3415		1389	422	514	628	417	45
교 육 청	1146		83	24	34	70	841	94